

대상업체별 고용비율표(제53조제1항 관련)

분류번호	업종	대상업체별 고용비율(%)
01	농업	5
02	임업	3
03	어업	3
05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3
06	금속 광업	5
07	비금속광물 광업(연료용 제외)	4
08	광업 지원 서비스업	3
10	식료품 제조업	5
11	음료 제조업	5
12	담배 제조업	7
13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외)	4
14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3
15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3
16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외)	3
17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4
18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3
19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6
20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6
21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6
22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5
23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7
24	1차 금속 제조업	6
25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	3
26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4
27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3
28	전기장비 제조업	6
29	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5
30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4
31	기타 운송장비 제조업	4
32	가구 제조업	3
33	기타 제품 제조업	3
35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8
36	수도사업	8

37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
38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4
39	환경 정화 및 복원업	3
41	종합 건설업	5
42	전문직별 공사업	5
45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5
46	도매 및 상품중개업	4
47	소매업(자동차 제외)	4
49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3
49100	철도운송업	5
49211	도시철도 운송업	5
50	수상 운송업	4
51	항공 운송업	5
52	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	5
55	숙박업	4
56	음식점 및 주점업	4
58	출판업	3
59	영상·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	3
60	방송업	3
61	통신업	5
62	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4
63	정보서비스업	4
64	금융업	7
65	보험 및 연금업	7
6511	생명 보험업	5
65121	손해 보험업	5
66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	7
68	부동산업	5
682	부동산 관련 서비스업	4
69	임대업(부동산 제외)	4
70	연구개발업	5
71	전문서비스업	3
72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3
73	기타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3
74	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	3
75	사업지원 서비스업	3
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4

85	교육 서비스업	4
86	보건업	4
87	사회복지 서비스업	4
90	창작,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3
91	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	5
94	협회 및 단체	5
95	수리업	5
96	기타 개인 서비스업	3
97	가구내 고용활동	3

비고

1. 위 표의 업종별 분류번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에 따른 분류번호란의 특정 중분류(2단위) 내에 소분류(3단위), 세분류(4단위) 또는 세세분류(5단위)별로 고용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별 고용비율에 대해서는 ① 세세분류(5단위), ② 세분류(4단위), ③ 소분류(3단위), ④ 중분류(2단위)의 순서로 적용한다.